

#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96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 이유

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거창군 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(안 제1조)

1)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

나.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업무를 정함(안 제2조)

1) 설치근거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

2) 업무: 약초의 선별·포장·규격출하·가공 및 판매, 홍보 등

다. 약초유통센터 위탁 및 이용료(안 제3조)

1) 근거: 법 제51조제2항·제3항

2) 생산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에 위탁

3)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 가능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

나. 예산조치: 2020년도 예산 78백만원 확보

다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0. 9. 17.~10. 7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불임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)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

##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1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 약초유통센터(이하 “약초유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약초유통센터는 집하장, 창고, 전처리(前處理)장 및 판매장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약초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.

④ 약초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약초(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·임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가공 및 판매
2. 약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한 홍보
3. 그 밖에 군수가 약초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) ①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약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거창군 조례 제2571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.

#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: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구입비, 유지비

나. 관련 조문: 제2조(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)

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군비	78	70	70	70	70	358

### 3. 관련 의견

거창군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약초유통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가.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, 공공요금: 20백만원

나.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구입비: 50백만원

작성자: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